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자원보호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대상 및 비식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8조의2 개정)

- 산업통상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핵심자원의 수출입량, 수출입가격, 과세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필요시 수입업자·수출업자 비식별화하여 제공 가능

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국제협력 업무를 규정(제36조 신설)

-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민간 공동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업무협약,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7조제1항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해 추

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제37조 신설)

- 정부는 공동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정보·자금 등의 지원,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 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부가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제38조 개정)
- 정부는 포상, 자원안보 정책홍보에 필요한 포럼·세미나 개최,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사항을 추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16. ~ 10.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 정보의 종합 관리를 위해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의 품목별, 수입업자·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
2. 핵심자원의 수출입가격(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및 과세내역

② 관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및 제38조를 각각 제38조 및 제40조로 하고,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국제협력 사업) 법 제 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원안보 관련 공적개발원조
2. 민간 공동개발 및 공동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간 업무협약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기술개발 사업)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2. 자원안보 관련 기술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정보·자금 등의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중전의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원안보를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 자원안보 정책 홍보에 필요한 포럼·세미나 등의 행사 개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중전의 제36조)의 제목 “(인력양성 및 교육)”을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사업)”으로 한다.

제37조 앞의 “제7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37조를 제39조로 한다.

제38조 앞의 “제8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4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과세정보의 대상 및 제공방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정보의 종합 관리를 위해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는 다음과 같다.</u> <u>1. 핵심자원의 품목별, 수입업자·수출업자별, 국가별 수출입량</u> <u>2. 핵심자원의 수출입가격(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및 과세내역</u> <u>② 관세청장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수출업자를 비식별화하여 처리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36조(국제협력 사업) 법 제 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u> <u>1. 자원안보 관련 공적개발원조</u> <u>2. 민간 공동개발 및 공동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국가간 업</u>

<신 설>

제36조(인력양성 및 교육) ① · ②
(생 략)
<신 설>

무협약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기술개발 사업) 법 제37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
사업

2. 자원안보 관련 기술개발 및
이의 사업화를 위한 인력·정
보·자금 등의 지원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기술개발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사
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8조 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원안보를 위해 노력한 개
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u>2. 자원안보 정책 홍보에 필요한 포럼·세미나 등의 행사 개최</u> <u>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제7장 보칙</u> <u><신 설></u> <u>제37조 (생 략)</u> <u>제8장 벌칙</u> <u><신 설></u> <u>제38조 (생 략)</u>	<u><삭 제></u> <u>제7장 보칙</u> <u>제39조 (현행 제37조와 같음)</u> <u><삭 제></u> <u>제8장 벌칙</u> <u>제40조 (현행 제38조와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251